

다자녀 특별공급 안내문

▣ 특별공급 신청일정

구분	일자		시간	장소
신청일시	해당지역 (대전광역시 거주자)	기타지역 (세종시, 충청남도 거주자)	10:00~16:00	당사 견본주택
	8월 1일(화)			
당첨자 선정	8월 2일(수)		14:00	당사 견본주택 개제
동·호수 발표	8월 10일(목)		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	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l2you.com)

※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

▣ 신청자격 및 요건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인 자녀 3명 이상(태아나 입양아 포함)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. 단, 동점자처리방법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,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.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하며,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.
 -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양관계증명서 등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됨.
 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임신,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(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7.27)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태아도 포함되며,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(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-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동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
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및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자

▣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공동서류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 서약서 (견본주택 비치)
	인감증명서 (주택공급 신청용)
	인감도장
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주민등록표등본 [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	주민등록표초본 [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해당자	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 (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(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 발급) [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]
	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) / 발급기준 : 본인
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[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]
	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[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]
	피부양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)
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(입양의 경우) ※임신진단서,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(모델하우스 비치)
대리인 신청시	한부모 가족증명서 (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)
	위임장 (견본주택 비치)
	신청인 인감증명서 (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